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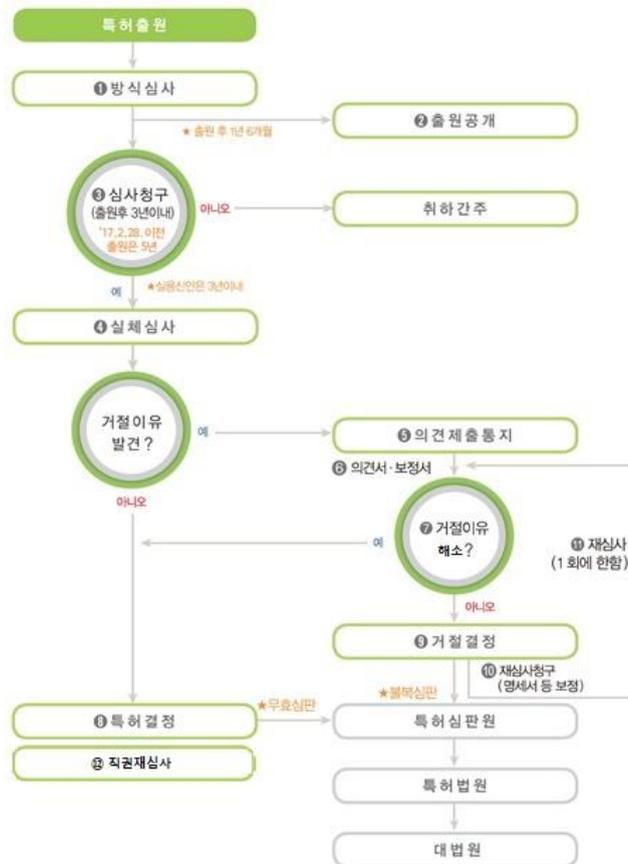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일자 2021.02.08  
 특기사항 심사청구(무) 공개신청(무) 참조번호(A21P0047)  
 출원번호 10-2021-0017244 (접수번호 1-1-2021-0155727-82)  
 (DAS접근코드08B9)  
 출원인성명 이찬석(4-1999-049978-1)  
 대리인성명 홍석영(9-2020-000260-0)  
 발명자성명 이찬석  
 발명의명칭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

##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제도 안내 : <http://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서지사항】**

<b>【서류명】</b>	특허출원서
<b>【참조번호】</b>	A21P0047
<b>【출원구분】</b>	특허출원
<b>【출원인】</b>	
<b>【성명】</b>	이찬석
<b>【특허고객번호】</b>	4-1999-049978-1
<b>【대리인】</b>	
<b>【성명】</b>	홍석영
<b>【대리인번호】</b>	9-2020-000260-0
<b>【대리인】</b>	
<b>【성명】</b>	신경호
<b>【대리인번호】</b>	9-1999-000326-6
<b>【발명의 국문명칭】</b>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
<b>【발명의 영문명칭】</b>	Virtual currency electronic wallet account creation system using QR code
<b>【발명자】</b>	
<b>【성명】</b>	이찬석
<b>【특허고객번호】</b>	4-1999-049978-1
<b>【출원언어】</b>	국어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홍석영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신경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0 면 46,000 원

**【가산출원료】** 9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0 항 0 원

**【합계】** 46,000원

**【감면사유】** 개인(70%감면)[1]

**【감면후 수수료】** 13,800 원

**【첨부서류】** 1.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위임장]\_1통

1 : 기타\_법령에서\_정한\_증명서류

[PDF 파일 첨부](#)

## 【발명의 설명】

### 【발명의 명칭】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Virtual currency electronic wallet account creation system using QR code}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거래정보가 담기는 계좌를 생성함에 있어 기존에 복잡한 계좌생성 단계를 QR코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계좌생성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3】 일반적으로 가상화폐[假想貨幣]는 지폐와 동전과 같은 실물형태의 화폐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화폐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암호화 기술의 신뢰를 인정받아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0005】 이러한 가상화폐의 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지갑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하다. 전자지갑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

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단계, 이메일 인증단계, 휴대폰 본인인증 단계, 기존 은행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인증, 2채널 인증과 같은 여러 단계의 인증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0007】 이와 같이 전자지갑 계좌개설은 번거롭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규 가상화폐 사용자를 늘리는 데 매우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고, 계좌개설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인증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가상화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 【선행기술문헌】

#### 【특허문헌】

【0009】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468479호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028286호

(특허문헌 0003)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114994호

####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0】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기존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회원이 직접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QR코드를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이용자가 생성된 QR코드를 인식하는 것 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지갑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한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과제의 해결 수단】**

【0012】 본 발명은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와, 상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는 제1단말기와, 상기 제1단말기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지갑의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QR코드 생성권한이 부여되는 제2단말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발명의 효과】**

【0014】 본 발명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계좌개설에 따른 번거롭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0015】 또한 본 발명은 계좌개설을 위한 기존의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염려가 없고, 보안효과가 높은 이점을 갖는다.

【0017】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간의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계좌개설 편의성이 더 향상되고, 신규 개설되는 계좌의 개수 및 계좌개설의 신속성이 더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사용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9】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0021】 기존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개설 방법으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단계, 이메일 인증단계, 휴대폰 본인인증단계, 기존 은행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인증, 2채널 인증과 같은 여러 단계의 인증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0022】 이러한 계좌개설 방식 및 시스템은 기존에 통용되는 화폐의 계좌개설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방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방식은 아직 전자지갑의 계좌가 없는 수많은 예비 사용자에게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확장성을 떨어뜨리고, 계좌개설에 따른 번거로움과 불편함등이 있었다.

【0024】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은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와,

【0025】 상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는 제1단말기와,

【0026】 상기 제1단말기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지갑의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QR코드 생성권한이 부여되는 제2단말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8】 상기 서버는 가상화폐의 계좌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버에 해당될 수 있다. 상기 서버는 기존의 생성된 계좌정보가 저장되고, 신규 개설되는 계좌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0030】 상기 제1단말기와 제2단말기는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0032】 그리고 상기 제1단말기 및 제2단말기는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서, 실제로는 제3단말기, 제4단말기, 제5단말기, 제n단말기와 같이 무수히 늘어날 수 있다.

【0034】 본 발명의 핵심은 미리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QR코드 생성 권한이 부여되고,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자지갑 계좌가 생성되고, 다시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로 QR코드 생성 권한이 부여되는 형태로 사용자 간에 반복적인 형태로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0036】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자지갑의 계좌가 생성되어 있는 단말기를 제1단말기로 정하고, 전자지갑의 계좌를 생성하고자 하는 단말기를 제2단말기로 가정하면,

【0037】 제1단말기를 통해 계좌생성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제2단말기의 사용자가 단말기의 카메라와 같은 인식수단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전자지갑 계좌생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정보는 서버에 저장되며, 이렇게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를 이용하여 제3단말기의 계좌생성시 제2단말기에 부여된 QR생성 권한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계좌가 생성될 수 있다.

【0039】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에는 제1단말기-제2단말기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여러 갈래의 가지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신규계좌 생성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고 계좌개설 또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0041】 본 발명의 전자지갑 계좌개설은 반드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와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홈페이지를 통해 QR코드를 생성하여, 생성된 QR코드를 단말기를 통해 인식하는 형태로 계좌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

【0043】 이상에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 【청구범위】

### 【청구항 1】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와,

상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는 제1단말기와,

상기 제1단말기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지갑의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QR코드 생성권한이 부여되는 제2단말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

**【요약서】****【요약】**

본 발명은 QR코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생성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거래정보가 담기는 계좌를 생성함에 있어 기존에 복잡한 계좌생성 단계를 QR코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계좌생성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계좌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와, 상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는 제1단말기와, 상기 제1단말기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지갑의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생성된 전자지갑 계좌를 기반으로 QR코드 생성권이 부여되는 제2단말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